
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정부조직법」 제18조에 따른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「원자력 안전법」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